

2025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2025년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공모하오니 식품·외식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 3. 2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 대상 식품·외식 분야의 현장 실무경험과 기술 습득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소 식품·외식기업 인력 부족 해소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 인턴(내국인 限) 채용계획이 있는 국내 식품·외식기업 중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업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0시간) 및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시간) 준수, 채용 인턴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간제 또는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이 가능하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체험형 인턴 채용은 지원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수산업종 또는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지원 제외

청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시점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단, 인턴의 근무 사업장 소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 기준' 준용 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하나, 졸업유예자 또는 예정자로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졸업 또는 수료예정일 기재 필수)
식품 외식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식품 제조·가공② 농식품 유통(도소매, 수출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업체 등)③ 외식프랜차이즈(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기업)④ 식품서비스(농식품 구독서비스 제공기업 등) 기준에 따름

○ (모집기간) 2025.3.24.(월)~2025.4.11(금) 18시까지 / 3주간

○ (사업기간) 2025.1.1~2025.11.30

- '25.11.30(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원
- * 단, 여건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한은 aT의 사전 승인 시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공고일 현재 인턴을 고용 중 또는 고용 완료 후('24년 채용 포함) '25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건비 소급 지원 가능(단, 지정 교육수료증 등 정산서류 제출 必)

○ (지원내용) 채용 인턴 인건비 및 직무 교육비

- [인건비] 승인된 인원 채용 후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시 인턴 인건비 일괄 지원 / 1인당 월 100만원(최대 3개월) 지원
- * 1개월 미만 근무 월의 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

$지급액 = 월\ 인건비 \times (휴일을\ 포함한\ 당월\ 근무\ 일수/당월\ 총일수)$
--

- [교육비] 인턴의 직무역량 및 기초 소양 능력 제고를 위해 aT에서 지정한 교육과정 수강 비용(1인 최대 2개 과정, 100%) 지원
- * 1인 1과정 수강 의무이며, 미수료 시 인건비 지원 불가 (교육비는 aT에서 직접 집행 예정)

○ (지원규모) 총 300명 내외 / 기업별 최대 30명

- * 사업 수요에 따라 기업별 최대 승인 인원 또는 인건비 지원 기간은 신청 대비 축소될 수 있음

○ (고용·지원 제한)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적발 시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구분	내용
고용 제한	참가기업과 체결한 고용 계약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사업기간(참가업체 인턴별 고용기간) 내 타 기관의 유사사업(인건비 관련 국비 보조 사업) 중복 참여자
지원 제한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수산기업
	인턴기간 1개월 미만 또는 인턴 기간 내 중도퇴사자 참가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운영절차)

① 지원기업 모집/선정	② 참여 인턴 채용	③ 사업 수행	④ 지원금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 및 신청 기업 접수(온라인) ○ 제출서류 등 계량 평가 후 최종선정 ○ 사업 이행확약서 제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자체 채용 규정에 따라 청년 채용(직무 무관) ○ 인턴 채용 결과 보고(→aT) 및 인턴 정보 전산 등록(F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턴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연수비 지급 - 인턴 교육 수강 ○ (aT) 기업별 채용 /수행 현황 수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인턴십 종료 후 정산 관련 서류* 제출 ○ (aT) 제출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인턴 활동보고서, 인턴/정규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이체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세금·4대보험 완납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aT가 요구하는 서류 (선정기업 대상 추후 별도 안내)

○ (기타사항) '25년 사업포기 및 최초 승인인원 대비 인턴 채용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불가 또는 선정평가 감점 부과

구분	내용	
평가 감점	○ 연중 사업 포기 (사업 포기 신청서 aT 제출)	△5점
	○ 최초 승인 인원의 50% 이하 하향 채용 (aT 사전 승인 득)	
지원 제외	○ 최초 승인 인원의 50% 초과 하향 채용 (aT 사전 승인 득)	△10점
	○ aT의 사전 승인 없이 채용인원 변경 또는 사업 중도 포기로 '25년 지원이 제외된 경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 지원사업 - 인턴십지원 - 식품기업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공통	참가신청서	인감날인본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인감날인본
	사업자등록증 1부	본사 근무 인턴이 아닌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포함 제출 필요 (단,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식품제조·가공업 경우 제출 必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발급본
	23~24년 12월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선택 (해당 시)	최근발급본 재무상태표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전년도 지원업체 限)	'24년 동 사업으로 지원한 인턴의 지속 고용 비율이 사업공고일 현재 50% 이상인 경우 제출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합시 우선선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법인

3 심사 및 선정

- 선정일정 : (심사/발표) 4월 중 * 선정 결과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서류평가 100%
-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일자리창출, 사업기간, 본사 소재지 등
-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지원규모 내 고득점순 선발

<참고>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30	27	24	21	18
재무건전성 (30)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부채/자본*100)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25 고용인원 증가		20 고용인원 유지		15 고용인원 감소
일자리창출 (25)	○ 고용인원 규모	25		20		15
		10년 초과	10~6	5~3	2~1	1년 미만
사업기간 (25)	○ 사업유지기간 - 설립일부터의 사업기간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25	23	21	19	17
		15		0		
기타 (20)	○ 비수도권 소재 여부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 (서울, 경기, 인천권)	
		5 해당		0 미해당		
가점	○ '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인턴 연수비를 지원받은 정규직의 지속 고용 비율 50% 이상					+5
감점	○ '24년 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 포기 또는 최초 승인 인원 대비 채용 인원이 미달된 기업					△5
선정 제외	○ '24년 사업 승인 후 채용계획 변경 보고 없이 연내 청년 인턴 미채용 기업					
	○ 최신년도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회사(자본총계마이너스)					
	○ 최종 평가점수 60점 미만					
합계(100)		총점			(점)	

- 1) 재무건전성 : 신청일자 기준 최신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표준대차대표 등)
- 2) 일자리 창출 : (2024년 12월 말 기준 종업원 수) - (2023년 12월 말 기준 종업원 수)
 - 제출 필요서류 : 고용 종업원 수 확인 가능한 4대보험 산출내역서(고용보험료)
 - '24년 신설 사업자는 '24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종업원 고용 확인 시 20점 부여
- 3) 신규 지원업체 : 직전 3개년('22~'24) 미선정 업체

※ 최종 합산 점수 경합 시, ① 농업경영체(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확인 必), ② 비수도권 기업, ③ 재무건전성, ④ 일자리 창출, ⑤ 사업유지기간 순 특점이 높은 기업 선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 푸드테크육성부(☎ 061-931-147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1 사업 참가신청서

2025년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기업명	00식품	대표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111111-111111		
업종	식품제조, 외식프랜차이즈	채용 담당자	성명		
			소속		
			연락처	010-0000-0000	
사업장 주소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 본사 사업자등록증 기준			설립연도	
'24년 동 사업 참가여부	예 / 아니오	정규직 전환인원	0명	'25년 지속 고용인원	0명
<상세 채용계획>					
직무	경영관리	품질관리	영양사	영업관리	
채용인원	00명	00명	00명	00명	
채용 예정시기	4월	4월(1명.)5월(2명)	0월	0월	
채용 기간	0개월	0개월	0개월	0개월	
본 사업은 인턴 채용(승인)인원의 50% 이상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_____ (인 또는 서명)					
계획 인원 대비 채용 인원 미달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감점 부과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_____ (인 또는 서명)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_____ (인 또는 서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붙임2 신청기업 사전 체크리스트

- ✓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농식품 기업, 외식기업**이 승인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 후, 최소 50% 이상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사업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란에 **체크표시(✓)** 후 제출 바랍니다.

확인사항	확인란
1. 신청기업은 농식품·외식기업 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제출	
2. 신청기업은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 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참여 근로자(인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참여 대상 근로자는 내국인에 한하며 ,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참여 근로자는 인턴십 종료 직후 정규직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6.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에 최저임금 이상 의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신청기업은 참여 근로자의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참여 근로자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해당 시,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절차로 처벌 됩니다.	
9.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참여 가능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참여 근로자가 고용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불인정 되어 지원이 불가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13. aT는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이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숙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선정 이후 상기 사항에 대한 위반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반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자한 경우 동일한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본사, 인턴 실근무 사업장)
2. 영업등록증/허가증/신고증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
3.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4.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5. 2023~2024년 12월 기준 4대보험 산출내역서
6. 최신년도 재무상태표
7.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가입자명부 ('24년 지원업체 限)
8.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해당 시)

〈참고〉 광역지자체 조례별 청년 연령 기준 (2025년 3월 현재)

광역(시·도)	구분	청년 나이	근거
광역시	서울특별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부산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대구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1항)
	인천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 1항)
	광주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2조 1항)
	대전광역시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장 제2조)
	울산광역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제1장 제3조 1항)
도	경기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충청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충청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전라남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 3조 1항)
	경상남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경상북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2조 1항)
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3조 1항)
	전북특별자치도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장 2조 1항)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